

—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—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7월 1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7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7월 8일

제10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
- 또한, 통리반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통리반 조정 : 3개통 증설, 3개반 감축
 - 통·리 : 560개 통리(통 393, 리 167)
⇒ 563개 통리(통 396, 리 167), (3개통 증설)

- 반 : 3,897개반 ⇒ 3,894개반(3개반 감축)
- **통리장 정수조정 : 3명 증가(통장)**
 - 통장 정수 : 393명 ⇒ 396명(3명 증가)
 - 이장 정수 : 167명 ⇒ 167명(변동 없음)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지방자치법 제4조6항에 의거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